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매뉴얼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대상자〉

- 수급자격 인정신청 후 자격이 인정된 사람
- 출석형이 아닌 인터넷형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허용된 경우 1차 및 4차 실업 인정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

1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및 본인인증

-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우측의 ‘개인로그인’ 클릭 합니다.
- ②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이 필요합니다.

개인 로그인

개인방화벽 프로그램 적용 ※ 개인방화벽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PC에 타인의 침입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위해 입력하는 개인 정보(주민번호, 비밀번호 등)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주세요.

인증방법 저장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 인증	디지털원패스
----------------	-------	---------	--------

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입력하신 정보는 본인 인증에만 사용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① 메인페이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버튼 또는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통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The image shows two screenshots of the employment insurance website. The top screenshot displays a grid of service icons. The icon for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Unemployment Confirmation Internet Applica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circled '1'. Other icons include '급여수급 자격조회' (Benefit Eligibility Check), '모성보호 안내' (Maternity Protection Guide), '육아휴직 급여신청' (Parental Leave Benefit Application),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Benefit Eligibility Applicant Online Education), '민원처리현황 실업급여' (Benefit Status Unemployment Benefi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Parental Leave Work Time Reduction Benefit Application), and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Benefit Application for Non-Applicable Employees of Employment Insurance). A notification on the right states '이 신청하신 민원은 총 0건입니다.' (There are 0 cases of this application) and a button '진행상황 자세히 보기' (View Details of Progress Status) is visible.

The bottom screenshot shows a menu structure. Under the '실업급여' (Unemployment Benefit) section, the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Unemployment Confirmation Internet Application) op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circled '1'. Other options include '민원처리현황' (Benefit Status),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Benefit Eligibility Applicant Online Education), and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확인 메뉴' (Check Item Menu for Benefit Eligibility Certificate).

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작성

①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 클릭 시 대상자 요건에 따라 상이한 화면이 표출됩니다.

㉞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대상자의 경우

The screenshot shows the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Unemployment Benefit Internet Application) page. The breadcrumb trail is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The page title is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and there is a '신청방법 안내' (Application Method Guide) button. The progress bar shows three steps: '1. 실업인정 정보' (Unemployment Information), '2. 재취업 활동' (Job Search Activity), and '3. 작성 내용 확인' (Check Content). The '신청인' (Applicant) section includes fields for '성명' (Name), '주민등록번호' (Residence Registration Number), '주소' (Address), '전화번호' (Phone Number), and '휴대전화번호' (Mobile Phone Number). The '실업인정' (Unemployment Benefit) section includes fields for '소정급여일수(남은일수)' (Scheduled Benefit Days (Remaining)), '총 실업인정일수' (Total Unemployment Benefit Days), '수급기간' (Benefit Period), '수급기간 만료일' (Benefit Period Expiry Date), and '구직급여일액' (Job Search Benefit Amount).

㉟ 수급자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The screenshot shows the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Unemployment Benefit Internet Application) page with an error message. The breadcrumb trail is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The page title is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The error message is enclosed in a red box and reads: '❗ 귀하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유료)'. There is a '되돌아가기' (Go Back) button at the bottom right.

㉔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귀하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001] 센터출석형 신청자입니다.

해당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센터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지정된 출석일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유료)

[되돌아가기](#)

㉕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지난 경우 및 기타

☞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귀하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지정된 출석일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유료)

[되돌아가기](#)

가. '실업인정 정보' 작성(①~⑧)

- ① 신청인 정보: 수급자격 신청 시 수급자의 개인정보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② 신청인의 실업인정 관련 정보가 보여집니다.
 - 소정급여일수(남은일수): 수급자격 인정 시 부여받은 급여일수입니다.
 - 총 실업인정일수: 현재까지 총 실업인정을 받은 날의 합계입니다.
 - 수급기간 : 수급자격신청일 ~ 수급만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구직급여일액 : 1일당 지급하는 구직급여액입니다.

[홈](#)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신청방법 안내

1. 실업인정 정보

2. 재취업 활동

3. 작성 내용 확인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실업인정

소정급여일수(남은일수)	120일(84)일	총 실업인정일수	36일
수급기간	2021/01/13 ~ 2021/05/19	수급기간 만료일	2021/05/19
구직급여일액	37,575 원		

③ 신청서

- 지정된 출석일: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입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이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현재 실업인정일(출석일)까지입니다.
- 계좌번호 : 수급자격 인정 시 등록된 계좌정보가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실업크레딧(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자 제외)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희망여부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지 않고 실업크레딧을 통해 납부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함’ 을 선택
- * ‘신청함’ 선택 시, 아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시 고지서 수령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자기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여부’, ‘재산 소득 확인 동의 여부’ 체크 박스가 활성화 됩니다.

③ 신청서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일)	2021/03/24 (3회차) (제출일 : 2021/03/24)	실업인정 대상기간	2021/02/25 ~ 2021/03/24
지급은행	[가려진 정보]	예금주	[가려진 정보]
계좌번호	<input type="checkbox"/> 계좌가 맞으시면 체크해 주세요.		

지금계좌번호변경 ▼

④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여부	<input type="radio"/> 신청함	<input checked="" type="radio"/> 신청하지 않음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시 고지서 수령 방법	<input type="radio"/> 우편고지	<input type="radio"/> 전자고지
국민연금 보험료 자기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input type="radio"/> 희망함	<input type="radio"/> 희망하지 않음
재산 소득 확인 동의 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크레딧 신청만 가능합니다. (*16.7.25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신청가능)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일 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및 신청 내역 변경(신청취소, 정보변경, 재신청) 관련사항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바로가기 ↗

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근로(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 또는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내역’에 체크하시고 관련 내용(근로제공일, 총근로시간 등)을 입력하여 근로내역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내역을 입력하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⑦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⑧ ‘다음’ 버튼 클릭 시, 재취업 활동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포함), 사업자 등록,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2배 추가징수와 아울러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근로내역 더보기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어떠한 형태로든(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하거나 수당이 발생하는 회의참석등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⑥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더보기 ▼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⑦ 취업내역 더보기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하셨습니까? 예 아니요

⑧ 다음

나. '재취업 활동' 작성(①~⑧)

- 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를 확인 후 체크하여야 합니다.
- ②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있음' 을 체크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신청방법 안내

1. 실업인정 정보
2. 재취업 활동
3. 작성 내용 확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포함), 사업자 등록,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2배 추가징수와 아울러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등 관련 안내

취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고 숙지하였습니다.

1. 구직활동내역

Tip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할 경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워크넷을 이용하시면 구직활동/실업인정신청이 더욱 편리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②
전체기간 중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있음
 없음

③ ‘있음’ 선택 시, ‘구직활동내역’ 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하신 경우, ‘워크넷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바로 불러올 수 있으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4차 실업인정 이전은 4주간 1회, 5차 실업인정 이후는 4주간 2회 구직활동 기재

- ‘구직활동일자’, ‘사업체명’, ‘인사담당자(담당부서)’, ‘전화번호’, ‘모집직종’, ‘구직방법’, ‘응모방식’, ‘활동결과’ 는 필수 입력.선택 사항입니다.

④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는 경우, ‘있음’ 에 체크 후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작성합니다.

- 구직활동의 활동사항이 2이상의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⑤ 구직활동(입사지원 내역, 팩스 등) 또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직업훈련 수강증 등)에 관련된 구비서류 첨부합니다.

⑥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등)을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⑦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방법을 선택하고 내용 입력합니다.

⑧ 내용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임시저장 후 다음단계로 진행합니다.

③ 구직활동내역1

초기화(-)

구직활동확인(워크넷)

구직활동없음

구직활동일자 * (기간)(2021/02/25 - 2021/03/24)	사업제명 *	인사담당자(담당부서) *	사업장 주소(E-mail)	전화번호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모집직종 *	보수수준	구직방법 *	응모방식 *	활동결과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선택 <input type="text"/>	선택하세요 <input type="text"/>	선택하세요 <input type="text"/>

2.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Tip

온라인 취업특강은 각 과정 1회 수강 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되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

④

전체기간 중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신가요?
ex) 계약제, 직업훈련, 부당해고 구제자, 일자리희망 프로그램 등 있음 없음

과정	세부내역(훈련기관,과정명,기간 등)
선택하세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⑤ 첨부구비서류

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파일명에 특수문자를 넣지마세요.)

[찾아보기](#) + -

- 구직활동내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출이 불가합니다.
- 첨부할 수 있는 최대파일크기는 15MB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첨부할 수 있는 확장자는 <txt, chm, tiff, jpeg, png, psd, rar, 7z, arj, lzh, tar, gz, alx, zip, jpg, gif, doc, docx, ppt, pptx, xls, xlsx, hwp, pdf>만 가능합니다.
- 이미지파일 확장자(bmp → jpg) 변경 방법 안내 [다운로드](#)

⑥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보기](#) v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

⑦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⑧

[이전](#)

[초기화](#)

[임시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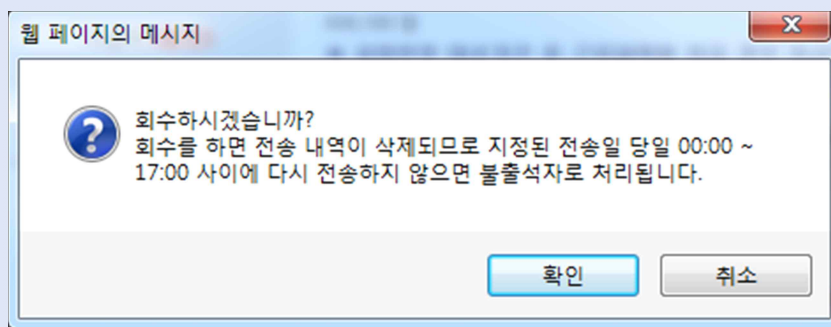
[다음](#)

다. '작성 내용 확인'작성

- ① 미리보기 : '실업인정 정보' 와 '재취업 활동' 에서 작성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수정 : 수정 버튼을 이용하여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삭제 : 삭제 버튼 클릭 시, 기 작성한 신청서가 삭제 됩니다.
- ② 제출 : 작성된 내용에 이상 여부 확인 후 제출합니다. 작성된 내용을 저장만 하시고 전송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실업인정 당일 이 아니거나 당일 전송시간이 지난 경우 전송이 불가합니다.
- ③ 완료 : 제출 버튼을 누르면 발생하는 팝업 내용을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전송내역 회수 및 SMS 발송

- 처리 중인 신청서의 내역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하신 경우 반드시 다시 전송(17:00까지) 하셔야 합니다.
 - 회수한 후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수정한 후에 당일 다시 재전송 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 신청서가 전송 완료되면 SMS가 발송됩니다.
 - [귀하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건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OO고용센터]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방법 안내



현재까지 작성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입니다.

공지사항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인정 처리결과를 거쳐야 하므로 최대 5일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당일 출근 예정일 경우 관할센터에 연락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윈도우10의 경우, '이 페이지에서 추가 메시지를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음'에 체크하지 마시고 진행하세요.
(이미 체크하였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새 창에서 진행하세요.)

~~~ 생략 ~~~

### 작성시 유의 사항

- 기재하신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및 지원금 등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징정처분(반환 및 추가징수)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부정행위 유형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위장고용, 해고 등)
- 이직사유 허위 기재
- 취업사실 은닉, 근로소득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

수정

삭제

2

제출

## 5

### 실업인정 신청서 진행사항 조회(①~③)

- ① 개인서비스 ‘민원 처리 현황’ 메뉴를 통해 민원처리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② 조건 설정 후 ‘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실업인정 신청 진행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③ 본인의 민원 처리 내역이 조회 됩니다.
  - 미전송 : 미전송으로 현재 작성 중인 상태
  - 전송완료 : 전송이 완료된 상태
  - 접수완료(처리중) : 전송완료 후 신청하신 서류에 대해 담당센터에서 처리 중인 상태
  - 처리완료 : 신청한 서류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상태
  - 보완: 신청한 서류에 대해 담당센터에서 필요 자료를 보완 중인 상태
  - 반려: 신청한 서류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

※ 각 처리 상태별 숫자는 처리 상태에 해당하는 신청수의 수입입니다.

1 실업급여

민원처리현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
- 수급자격증 재교부 신청
-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청구
- 개별연장급여 신청
- 상병급여(일반)청구

민원처리현황

|           |                                                                                                                                                                      |
|-----------|----------------------------------------------------------------------------------------------------------------------------------------------------------------------|
| 온라인(홈페이지) | 센터에서 신청                                                                                                                                                              |
| 업무구분      | 실업급여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
| 서식        | 전체 <input type="button" value="▼"/>                                                                                                                                  |
| 처리상태      | 전체 <input type="button" value="▼"/>                                                                                                                                  |
| 기간별       | <input type="button" value="1주일"/> <input type="button" value="2주일"/> <input type="button" value="1개월"/> <input type="button" value="3개월"/> <small>(접수일자 기준)</small> |
| 기간 설정     | 2021/02/01 <input type="button" value="📅"/> - 2021/03/01 <input type="button" value="📅"/>                                                                            |

2 검색

민원 처리 현황

총 1 건

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연<br>번 | 접수번호                                                                   | 접수일<br>(처리기한)              | 처리상태                                     | 처리기관  | 전송처리         |
|--------|------------------------------------------------------------------------|----------------------------|------------------------------------------|-------|--------------|
| 1      | 민원업무(서식)                                                               | 처리일<br>(지급일)               | 처리자                                      | 오류메세지 | 반려요청<br>(회수) |
|        | <div style="background-color: #eee; height: 20px; width: 100%;"></div> | 2021/03/01<br>(2021/03/09) | 작성중(미전송)<br>(2021/03/24, 17시까지<br>전송 요망) |       | 삭제           |
|        | 실업인정 신청서                                                               |                            |                                          |       |              |

1



처리상태 안내

- **미전송**: 민원인이 작성한 신청(신고)서를 작성중인 상태입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각 신청(신고)서 신청화면에서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관할센터로 신청(신고)서가 접수됩니다.
- **전송완료**: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신고)서가 관할센터로 전송된 상태입니다.
- **처리중**: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신고)서가 관할센터로 접수완료되어 처리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신고서별로 처리 기한이 차이가 있습니다.
- **처리완료**: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신청)서가 처리완료된 상태입니다. 실제 지급시점은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보완**: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신청)서에 대하여 관할센터 담당자가 검토하여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상태입니다.
- **반려**: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신청)서가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해당 신고서를 반려한 상태입니다. 반려된 신고(신청)서는 상세내역을 조회하여 반려사유 확인 후 내용을 보강하여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① 사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②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 ③ 당초 등록된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

## 2.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기준(시행규칙 제92조)

-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제1호)
- ②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당연 적용 근로자에 해당
  -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월 723천원( '15년 669천원)의 임금을 받으면 해당기간 동안 실업 불인정
  - 다만, 월 723천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 시행규칙 제92조제4호를 적용하여 실업인정
  - 월 493천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에 해당
  - ※ 급여기초일액 산정을 위한 최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 “생계 목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
- ③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3호)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근로한 날은 취업에 해당

하므로 해당 근로일수를 제외하고 구직급여 지급

-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제4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 ※ 시행규칙 제92조제4호는 동조 제1호에 해당하는 형태의 취업은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기간을 취업으로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제6호)
- ⑦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호)

시행규칙 제92조제4호 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

- 시행규칙 제92조제4호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소득은 당해 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된 날로 나누어 그 날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날을 말함
- 이때, 근로의 제공이 연속하여 매일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구직급여일액 이상 여부를 판단
  - \* 예시) 4주간 1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백만원 ÷ 28일」로 소득일액을 산정하여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동 기간 모두 취업으로 인정
- 근로의 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해고 근로일로 나누어 해당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 \* 예시) 4주간 1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3일씩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백만원 ÷ 4주간 근로일수(12일)」로 해당일의 소득일액을 산정하여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해당일은 취업한 것임(일하지 않는 날은 당연히 취업이 아님)



- 개개의 날마다 소득액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에는 개개의 날의 소득액으로 개개의 날의 취업 여부를 판단함
- 근로의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추후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경우도 취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 예시) 한 달간 번역 일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적에 따라 받을 예정으로 소득이 얼마가 될지 불명확한 경우 등

### 시행규칙 제92조제6호 및 7호 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

-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은 없더라도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에 해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소지자,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경우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제출하고,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교부
  - ※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생명·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가 되고자하는 자를 금융감독위원회(보험협회)에 등록하여야 함
- 다단계판매원 중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회원(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물건구매 시 일정액의 후원수당을 받는 소비자회원)은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 소비자회원 여부에 대해서는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확인(자가소비형 IBO 확인서 등)
- 기타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경우는 아니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촉직 채권추심원, 캐디, 텔레마케터, 개인교습, 농업 등)는 시행규칙 제92조제 7호에 의한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 **3. 인터넷 실업인정 시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인터넷 실업인정은 통상 4주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재취업활동은 4주에 최소 1회 이상(5차 실업인정 이후는 4주간 최소 2회 이상)을 하여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취프로그램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되며, 취업특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 직업훈련 수강의 경우에는 월 30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1개 과정만 수강할 경우 수강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반드시 구직활동 1회 이상 또는 별도의 훈련과정 수강 또는 취업특강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 4. 구직활동 내역 입력 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인정되므로 구직활동은 1회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5차 실업인정 이후는 1회만 입력하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별도의 직업훈련 수강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특강 등 직업지도에 참여한 경우만 인정 가능하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화면에서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회만 인정되며, \* 표는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여야만 다음단계로 이동됩니다.
- 면담자의 경우 면담을 하지 않은 이-메일 입사 지원 등은 담당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확인 자료 첨부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이-메일」 입사 지원 시는 반드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5. 구직활동 확인자료 파일첨부 방법

- 첨부할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는 <파일첨부>란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찾아 첨부하면 됩니다. 이메일 입사지원 등은 해당 파일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실행하여 파일을 생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 모니터 화면에 캡처할 화면을 띄운다.
- 키보드상 프린트스크린(Prt Scr) 버튼을 누른다.
- 모니터 왼쪽 하단 시작 -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그림판을 실행시킨다.
- 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편집 - 붙여넣기(Ctrl+V)를 한다.
- 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파일 - 저장(Ctrl+S)을 한다.

#### 6.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시행규칙 제87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

-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규칙 제87조제1호)

이력서 등 구직서류를 구인업체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직업소개소 등 중간업체에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다만, 업종 특성상 중간업체에

제출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규칙 제87조 제2호)
-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규칙 제87조제3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실업자훈련, 능력개발계좌제(월 30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 등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 ④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규칙 제87조제4호)
  - 직업지도 프로그램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성취, 취업희망, CAP)뿐만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재취업 지원을 위해 행하는 각종 조치를 포함(단기 취업특강, 사회봉사활동 등)
- ⑤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규칙 제87조 제5호)
- ⑥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 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규칙 제87조 제6호)
  - ※ 수급자격자가 특정 직종에 취업을 목적으로 자격취득 등을 위해 학원에 수강하는 경우에는 학원수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강증 등)를 제출하는 경우
- ⑦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 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규칙 제87조제7호)
- ⑧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규칙 제87조제8호)
  - 「재취업 관련 설문지」를 작성할 때 업종, 개시예정일, 준비활동 등을 기재하고 동 내용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 ⑨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규칙 제87조제9호)

⑩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규칙 제87조제10호)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소개, 성취프로그램 등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지시에 응한 경우, 재취업지원프로그램 그 밖의 직업훈련지시에 응한 경우. 다만,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 또는 재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최대 2주간의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규정 제10조제4항제1호)
- 실업인정특례자로 인정받은 도서거주자 또는 장애인(자력으로 거동이 곤란한 자로 한정)이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상담을 한 경우(규정 제10조제4항제2호)
-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업체에 구직서류를 접수하거나 선원 구인·구직등록기관에 구직자등록을 한 경우(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접수 또는 등록한 경우로 한정)(규정 제10조제4항제3호)
-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규칙 제92조제3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규정 제10조제4항제4호)
- 위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규정 제10조제4항제5호)

※ 재취직할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인사 담당자와 취업보장 약속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에서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수강하는 경우 등

## 7.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자영업 준비활동의 기준

① 자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재취업 관련 설문지 작성 시에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자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활동을 작성하여야 함

※ 자영업 개시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에게는 “재취업 관련 설문지”에 업종, 개시 예정일, 준비활동 등을 작성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② 「재취업 관련 설문지」 작성·제출 이후 동 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자영업 준비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이력서 등 구직서류를 구인업체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직업소개소 등 중간업체에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다만, 업종 등의 특성상 중간업체에 제출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특별한 사업 준비활동 없이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가게물색이나 시장조사만을 행한 경우 등은 구직급여 부지급 대상(이 경우에는 별도의 구직활동을 병행하여야 함)

보험대리점 개설을 위한 교육·훈련수강이나 보험모집인·채권추심원 등 입사를 위한 교육만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 별도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부지급 대상(다만, 훈련·교육을 수강하는 기간은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③ 수급자격자가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수행하는 자영업 준비활동의 내용·일정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으나 반복적인 경우는 구직급여 부지급 대상

## 8.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  
\* 사회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를 참조
- ⑦ 자영업 준비 활동
-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 ⑩ 직업심리검사 등(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8시간 초과 시 재취업활동 2회 면제, 1주, 1개월 과정도 2회에 해당)

\* (예시) 취업컨설팅 회사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 ⑫ 일반 기업의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이수(8시간 초과시 재취업활동 2회 면제, 1주, 1개월 과정도 2회에 해당)

\* (예시) 이직한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직지원프로그램, 경비이수교육 등

- ⑬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중 관련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취·창업 교육, 컨설팅도 인정
- ⑭ 구직신청서 내실화(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최대 2회만 인정)
- ⑮ 민간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등록 인정(1회만 인정, 민간 취업포털사이트는 해당없음, 수급자격 신청시 하는 구직등록은 불인정)
- ⑯ 고용복지+센터 입주기관 등 취업상담(실업인정 담당자가 상담을 지시하는 경우에 한함 → 고용복지+센터 전산상 연계)
- ⑰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 또는 재취업지원 프로그램(횟수제한 없음. 다만, 동일 프로그램은 2회까지만 인정)
- ⑱ 기타(선원 구직등록, 근로자파견업체 구직 접수,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 제공, 고령자의 경우 지자체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참여 인정(단, 150일까지만 인정), 직전 실업인정일에 신고한 본인의 재취업활동 계획 이수 시)